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31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8. 6. 15. 한 취득세 500,000원의 부과처분, 1998. 8. 10. 한 가산세 100,0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피고가 1998.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00,00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신고가 처분으로 의제되므로[1], 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청구취지를 취

1) 이와 같은 지방세 신고납부의 처분의제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면서 삭제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득세 부과처분으로 의제되는 1998. 6. 15. 신고와 1998. 8. 10. 가산세 부과처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경 B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8.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1998. 6. 10. 취득하였다면서 과세표준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500,000원을 자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가 신고납부기한인 1998. 7. 10.까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8. 8. 10.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세액 500,00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원(= 500,000원 × 20/100)을 더한 600,000원을 1998.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계속하여 위 취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납세고지를 거쳐 2014. 5. 3. 취득세 및 가산세 600,000원, 구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462,000원 합계 1,062,000원(=600,000원 + 462,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신고납부가 처분으로 의제되지 않게 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소기간의 제한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는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 등 확인 소송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고 및 처분의 당연무효

원고는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C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 및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2) 징수권의 소멸시효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징수권은 이 사건 신고 및 처분에 기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 및 처분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어 이 사건 취득세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참조).

(2) 다음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3, 5,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1997.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9.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아버지인 D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번호	설정등기일자	말소등기일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1	1998. 2. 3.	1998. 9. 30.	1,800만 원	D	E
2	1998. 9. 30.	1999. 3. 31.	2,300만 원	D	F
3	1999. 3. 31.	2001. 7. 3.	2,700만 원	D	주식회사 대전상호신용금고

(다) 이 사건 부동산에 1999. 3. 31.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C가 2001. 7.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95. 6. 9.부터 2002. 11. 1.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으며, 다만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2001. 7.경 약 1개월간만 다른 곳에 주소를 두었다.

(3)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2002. 1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한 점, ②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피고에게 취득세 신고를 한 점, ③ 원고의 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기 이전인 1998. 2. 3.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 후 이 사건 신고 시기에 근접한 1998. 9. 30.과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1999. 3. 31.에도 근저당권의 설정과 말소를 반복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취득세 신고는 납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진 적법하고 유효한 신고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 신고납부기간 내에 취득세 5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피고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항에 따라 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 부과과세방식 등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절차와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는 별개의 독립한 절차인데, 조세채무 확정절차로서 1998. 6. 15.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신고와 1998. 8. 10. 이루어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현재 징수권이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징수권이 시효소멸되었다고 하여 기왕의 적법했던 이 사건 신고 및 처분이 위법해지거나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고진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판사 정유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 중구 H, I, J 제5동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3층

연립주택

1층 368.55㎡

2층 368.55㎡

3층 368.5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55.4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대전 중구 H 대 4531㎡

3. 대전 중구 K 대 1㎡

대지권의 종류: 1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252분의 75.06.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관계 법령

■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체납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30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15조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제120조 (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끝.